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3. 7.

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3. 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등 「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와 유사·중복기능인 위원회 규정 삭제 (안 제5조 ~ 제7조)
- 나. 위원회 규정 삭제에 따른 준용 규정 명시 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다.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완화 (안 제12조)
- 라. 계약해지 및 명의변경에 관한 협의회 심의 기능 조정 (안 제13조 및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검토의견 미반영[복지지원과-2825(2024. 1. 18.)호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9조(협의회의 구성)제3항 ⇒ 위원은 민관학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9조(협의회의 구성)제3항 ⇒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학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24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1. 22. ~ 2024. 2. 13.(22일간)

나) 예고결과: 별도 의견제출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고성군의”를 “군의”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

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2조의 제목“(입주자격)”을“(입주자격 및 거주기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고성군”을 “군”으로, “초등학생”을 “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. 다만,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군내 중·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2항 단서 중 “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입주자격”을 “입주자격 및 거주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입주세대의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후 군내 중·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거주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<u>고성군수</u> 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<u>고성군</u>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<u>군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작은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</p> <p>1. <u>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사업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<u>위원회</u>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</p>	<p>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군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
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.

1.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
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과장
1명

2.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
원 1명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
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
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
으로 한정한다.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
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
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
운 경우

2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
는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
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
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우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업무 담당이 처리한다.

제9조(협의회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촉 사항은 제6조제4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제9조(협의회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

제10조(협회의의 운영) ① (생략)

② 협회의의 회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(생략)

제12조(입주자격)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고성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로 한다.

<신설>

제13조(입주자 선정) ① (생략)

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를 신청한

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협회의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입주자격 및 거주기간) ①

----- 군 -----
-----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원-----.

②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. 다만,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군내 중·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(입주자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세대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통해
심의·의결 한다.

③ (생략)

제14조(거주기간) 임대주택의 거
주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초등학
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로 한다.

제15조(입주계약 등) ① (생략)

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
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. 다
만,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
의 특별한 사유로 명의를 변경
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계약의 해지 등 조치) ①
(생략)

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
있다.

1. 제12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
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

2. ~ 5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거주기간) <삭제>

제15조(입주계약 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-----.

----- 협의회-----
-----.

제17조(계약의 해지 등 조치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입
주자격 및 거주기간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
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조항을 보완하는 선언적으로
규정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생략함.

작성자: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
2. “작은 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. 단,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